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정필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5716

발의연월일: 2020. 11. 25.

발 의 자:정필모·이용빈·유정주

한준호 • 이학영 • 신영대

변재일 • 허 영 • 박광온

오영환 · 김성주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발전용원자로의 건설허가, 원자로의 운전면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.

「방송법」, 「전기통신사업법」,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, 「항공사업법」 등 다수 법률에서는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엄격히 하고 있음.

그런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단 한 번의 사고로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할 수 있지만 다른 법률보다 완화된 결격사유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원자력안전과 관련되는 허가, 면허 등의 결격사유를 현행보다 더 엄격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

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허가나 면허 등을 받을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, 원자력 관련 자격관리를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것임(안 제14조제2호 및 제85조제3호).

법률 제 호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4조제2호 중 "2년"을 "3년"으로 한다. 제85조제3호 중 "2년"을 "3년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) ① 제14조제2호 및 제85조제3호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0조제1항, 제12조제1항, 제20조제1항, 제30조제1항, 제30조의2제1항, 제35조제1항·제2항, 제45조제1항, 제 53조제1항, 제63조제1항 또는 제84조제1항에 따른 허가·인가·지정 또는 면허를 받거나 제54조제1항 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등록, 제 52조제1항 또는 53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사람부터 적용한 다.

② 제14조제2호 및 제85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 3조 단서, 제17조제1항 단서, 제24조제1항 단서, 제32조제1항 단서, 제38조제1항 단서, 제48조제1항 단서, 제57조제1항 단서, 제66조제1 항 단서, 제81조제1항 단서 또는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가·허가·지정·등록 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제52조제6항 또는 제57조제1항에 따른 사용금지 또는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③ 제14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9조제1항, 제29조, 제34조제1항, 제44조, 제51조, 제62조, 제69조 또는 제83조에 따른 승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4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14조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	
10조제1항의 허가를 받을 수	
없다.	 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	2
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	
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	
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	
후 <u>2년</u> 이 경과되지 아니한	<u>3년</u>
자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	
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	
있는 자	
3. • 4. (생 략)	3. • 4. (현행과 같음)
제85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	제85조(결격사유)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	
제8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을 수	
없다.	,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
3.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	3
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	
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	
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	

후 <u>2년</u> 이 경과되지 아니한	<u>3년</u>
사람이나 형의 집행유예를	
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	
중에 있는 사람	
4.•5. (생략)	4.•5. (현행과 같음)